

전기사용신청서

□ 전기사용자

성명*		신청일자/접수번호	20 . . . /
전기사용장소*		상호(공동주택)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e-mail	@	휴대전화*	- -

□ 건축물(토지) 소유자 (이하 "소유자" 라 합니다.)

소유자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표시는 개인정보 필수입력사항입니다. 법인은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사항

신청구분		공급방식	상선식 V	사용희망일	20 . . .
계약종별	전력	사용용도		주생산물	
계약전력	kW	설비용량	변압기설비 kVA, 사용설비 kW		
선택요금	I□, II□, III□, IV□	APT 계약방법	단일계약□, 종합계약□,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청구방법	모바일□	- -	이메일□	@	
	※ 청구방법 미선택 시 전기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모바일 청구가 기본 선택됩니다.				
	우편청구□	우편 수령주소 ()			
자동이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기공사업체명	(인)	면허번호			
		전화번호			
전주관리	변압기설치 전주번호:		인입전주 번호:		

전기공사업체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유자격 내선공사 업체명을 기재하고 공사업체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 밑줄 및 회색글씨는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공사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을 신청합니다.

- 한전 전기설비에 대한 시공, 수리, 변경 등 공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정전작업이 발생할 경우, 정전작업에 협조하고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자체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한전의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매매(임대차)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
- 사용설비 용량 또는 전기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계약전력 또는 계약종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알리겠으며,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한전의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전기사용자

(서명 / 인)

위와 같이 전기사용 신청함을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TV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 관련)】

한국전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에 따라 방송법 제64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개인정보 등을 한국방송공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서는 선택사항이며, 전기사용계약과는 무관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내용]

1. 제공받는 자 : **한국방송공사**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 관리**

3.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TV수신료 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정보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특정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채권·채무 잔존 시에는 채권·채무 정산시까지 보유합니다.

5.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객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사결과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취득될 수 있으며 말소, 면제 등도 고객이 직접 KBS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신료 제도 안내(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1. 수신료 징수근거 : TV수상기 소지만으로 납부의무 발생(방송법 제64조)

2. 수상기의 등록 : 소지자가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38조)

※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분(3만원)의 추징금 부과(방송법 제66조)

3. 수상기 등록변경 : 장소, 소지대수의 변경 등은 2주일내에 신고하여야 함(시행령 제40조)

4. 수상기 등록말소 : 양도, 파손, 멸실 발생시 2주일내에 신고하여야 함(시행령 제41조)

※ 수상기를 폐기하더라도 등록말소 전까지는 수신료 납부의무가 유지됨(시행령 제40조)

5. 수신료의 징수 :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의 가산금 부과(시행령 제47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자(KBS) 제공동의(✓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전 기 사 용 자

(서명 / 인)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서】

※ 본 동의서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변경)시 보증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신용정보에 따라 보증금 면제를 희망하는 고객이 작성합니다.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보유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및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등

· **조회 목적** : 보증금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동의서 유효기간** : 제출한 시점부터 전기수급계약 해지 시까지

전 기 사 용 자

(서명 / 인)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전기사용신청서의 작성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서상의 서명·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였음을 확인하고 전기사용신청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서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서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1. 다른 사람의 인장·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전기사용신청을 위임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에 따라 **전기사용신청 목적 외 용도로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동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전기사용신청 후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대리인은 신분증과 전기공사업 등록증 원본을 모두 제시하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기본공급약관 주요내용】

- (소유자 동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기본공급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 (계약해지 조건)** 소유자는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사용자가 계속해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해지 희망일)**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지후 재사용)** 전기사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설계시설부담금과 재사용수수료를 합산한 금액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10년 이후는 신규시설부담금 납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계약전력의 감소 포함) 고객과 동일한 고객이 1년 이내에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기본공급약관 제16조에 따라 해지기간의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재사용수수료)**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공급이 정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은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수급지점)**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집니다.
- (배상책임 한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및 누전·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요금적용전력)** 최대수요전력계 설치한 고압이상의 고객은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 1, 2, 7, 8,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 시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함)
- (역률요금)** 계약전력 20kW 이상 일반용·산업용·농사용·임시전력(을) 및 교육용 고압고객은 역률에 따라 요금을 추가 또는 감액합니다. 9시부터 23시까지는 지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까지 미달하는 역률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역률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23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진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까지 미달하는 역률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여 부과되므로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개별 기기별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요금)**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일반용전력(갑)·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갑)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I)요금 또는 선택(II)요금을 적용하고,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I)요금, 선택(II)요금 또는 선택(III)요금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월간 사용시간이 20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I)요금, 20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택(II)요금이 유리하며, 500시간 초과 사용시에는 선택(III)요금이 유리함)
- (1주택수가구 요금)**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주택수가구 전기요금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기본공급약관 제67조 6항 2호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기타계절 월 8~16천원, 여름철 월 1~2만원 한도) 또한,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가구에 대하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감액합니다.(월 16천원 한도. 단,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할인한도 없음)
- (최저요금)** 주택용전력 저압고객 및 임시전력(갑) 고객은 월간 전기요금이 1천원 미만시 최저요금 1천원이 부과됩니다.
- (연체료)** 고객이 납기일을 경과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처음 1개월과 다음 1개월에 대하여 각각 미납요금의 1.5%를 연체료로 부과합니다.(2개월 누계 최대 3% 부과)
- (초과사용부가금)**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는 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을)·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초과 사용횟수에 따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을 합산한 단가의 150%~250%를 부과합니다. 계약전력 1kW마다 월 720kWh 초과사용시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을 합산한 단가의 300%를 부과합니다.
- (위약금)**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약관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휴지)** 농사용전력 등 기본공급약관 제8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전에 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용량고객 계약변경)** 계약전력 5kW 이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은 주택용전력으로 계약종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관준수 의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서 확인 가능]

상기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기사용자

(서명 / 인)

전기사용신청서 작성방법

□ 전기사용자

1. 성명 : 실제 전기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법인은 법인명 기재)
2. 신청일자 및 접수번호 : 신청일자는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날을 기재하며, 접수번호는 한전의 접수담당자가 기재합니다.
3. 전기사용장소 : 실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장소)의 법정 지번을 기재합니다. (건물이 없는 경우 토지 지번 기재)
4. 상호(공동주택)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명을 기재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 실제 전기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
6. 전화번호 : 실제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7. e-mail : e-mail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8. 휴대전화 : 실제 전기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건축물(토지) 소유자

9. 소유자명 : 건물(또는 토지)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재)
10. 주소 :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1.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2. 전화번호 : 건축물(토지) 소유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휴대전화 포함)

□ 계약사항

13. 신청구분 : 신설, 증설, 일부해지, 공급방식 변경(증설), 계약 단위 합병, 계약단위 분할, 공급선로 변경, 수급지점 변경, 인입선 위치 변경, 해지후 재사용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4. 공급방식 : 1상 2선식 220V, 3상 4선식 220/380V 또는 3상 4선식 22,900V, 154kV, 345kV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15. 사용희망일 :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공급설비의 공사유무에 따라 한전의 공급준비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계약종별 : 실제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본공급약관 및 동 시행세칙의 구분에 따라 결정합니다.
17. 사용용도 : 실제 전기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 주거용, 상업용, 관공용, 농사용, 가로등용, 광공업용, 공공용, 국군용 등)
18. 주생산물 : 주거용고객 이외의 고객이 작성하며 영업목적물 기재 (예시 : 휴대폰 판매, 슈퍼, PC방, 농산물 건조, 자동차제조 등)
19. 계약전력 : 전기사용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의미하며,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의 합계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20. 설비용량 : 변압기설비와 사용설비 중 계약전력 결정기준으로 선택한 설비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21. 선택요금 : 월 사용시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종류입니다. (기본공급약관 주요내용 10번 참조)
22. APT 계약방법 : 아파트고객의 경우 선택하는 계약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3. 세금계산서 발행 : 전기요금 및 시설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청구방법 : 전기요금청구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모바일·이메일 청구서를 우선 선택하고 불가피하게 종이청구서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수령할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25. 자동이체 : 금융기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계좌이체하고자 할 경우 작성합니다.
26. 전기공사업체명 : 전기공사가 수반되는 전기사용신청의 경우 적합한 면허가 있는 전기공사업체명을 기재하고, 공사업체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27. 전주관리 : 한전이 작성합니다.

□ 기타사항

28. 전기사용자 날인 : 실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합니다.
29. 소유자 날인 : 실제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사용자의 전기사용에 관한 동의 의사표현을 위해 서명(날인)합니다.
3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전기사용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항목, 이용·보유기간 및 제3자 제공 조건을 전기사용자 및 소유자가 확인하고 동의하기 위해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31.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 전기사용자와 소유자의 전기사용신청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를 통해 한전이 관련 서류를 직접 열람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3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 :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 신청하여 전기사용자의 신용정보에 따라 보증금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동의함을 서명(날인)합니다.
33.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전기사용신청 업무를 위임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날인)합니다.